

#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1월 22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1월 2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2. 5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김미화 교육청소년과장)

### 가. 개정사유

○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신규 개관에 따른 사용 기준 및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고, 청소년 문화 활동 및 교류를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명칭, 기능 및 위치 신설(안 별표 1)
-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기본시설 사용료 추가 및 부대시설 사용료 신설(안 별표 2)
- 포항시 청소년수련원 가족실 사용료 및 일반야영장 사용료 개정(안 별표 2)

### 다. 관련법령

- 「청소년 기본법」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○ 본 조례안은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신규 개관에 따른 사용 기준 및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고,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#### ○ 종합검토 결과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시설을 설치·운영해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에서 청소년활동 시설의 종류, 제11조제1항에서 청소년 시설에 설치·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포항시 ‘청소년수련관’, ‘포항시 남·북구 청소년문화의 집’, ‘포항시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’은 상위법령에 따른 ‘청소년 수련시설’로,
- ‘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’이 2025년 11월 3일 개관하여 「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3조에 따라 [별표1] ‘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’을 개정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사용료 및 수강료의 경우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24조에서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가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,
- 개정안 [별표2] 중 ‘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’, ‘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’, ‘포항시 구룡포 청소년수련원’의 사용료와 ‘청소년 수련시설’ 교육강좌 수강료를 개정하는 부분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